

*이 상품은 보험상품이며 은행의 예·적금과 다릅니다.

KB 금융그룹



연금

무배당

KB 골든라이프 플래티넘 e연금보험



*이 상품은 보험상품이며 은행의 예·적금과 다릅니다.

*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을 중도해지 할 경우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사업비 등이 차감되므로, 해약환급금은 납입보험료 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 모집종사자는 본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험상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험계약 체결 전에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사

 KB 국민은행

보험사

 KB 라이프

무배당 KB 골든라이프 플래티넘e연금보험

비과세혜택

관련세법이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조기연금개시

본인의 라이프사이클에 맞추어
조기에 연금을 개시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시중 실세금리를 연복리로 적용

연금 재원을 시중금리에 연동한 공시이율로 부리하여 적립함으로써
연금을 통한 노후설계가 가능합니다.



유연한 자금활동 연금개시전

납입기간연장가능	10년납 이상의 경우, 10년납 이상으로 단축 또는 연장 가능
선납	6개월 이내(단, 3년납 이하는 11개월 이내)로 하며, 월납보험료의 배수로 납입 가능
중도인출	- 연간 12회, 1회당 해약한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의 60%이내로 인출 가능, 수수료 無 - 인출 후 구좌당 300만원 이상 유지 ※ 계약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인출시, 각 인출시점까지의 인출금액 총합계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중도인출시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부리되는 이지만큼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에서 차감 하여 지급하므로 연금액 및 해약한금이 현저하게 감소하거나 이미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추가납입	해당월까지 납입 가능한 기본보험료 납입총액(선납 포함)의 200% 이내 ※ 국고채수익률(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5년 만기 국고채권의 최종호가수익률)이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이 계약의 최저보증이율 이하로 하락한 경우 회사는 추가 납입보험료 납입한도를 축소할 수 있습니다.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한도를 축소한 경우 회사는 홈페이지에 공시 등의 방법으로 안내합니다. ※ 중도인출 및 인출서비스에 의한 인출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 추가로 납입가능 ※ 추가납입 보험료에 대해서는 소정의 사업비가 공제됩니다. ※ 이 보험계약은 기본보험료 이외에 보험기간중에 수시로 추가로 납입할 수 있는 추가 적립보험료 납입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미 보유하고 있는 저축성보험에 추가납입 하실 경우 사업비 절감효과로 새로운 저축성보험에 추가가입하는 것 보다 해약한금 및 만기환급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 다만, 추가납입한도 및 횟수, 납입가능 기간 등은 해당상품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약관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납입일시중지	신청횟수에 관계없이 총 36개월을 한도로 함 ※ 납입 일시중지기간 동안에는 이 보험의 보험료 및 해약한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약한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 기준)에서 월공제액을 차감합니다. ※ 경우에 따라, 납입일시중지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납입일시중지 기간동안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 납입 불가 ※ 납입중지된 기간만큼 납입기간 연장됨(단, 연장된 납입기간이 보험기간 초과시 보험기간 자동연장됨)

01 시중 실세금리를 연복리로 적용

최저보증이율은 계약 후 경과기간 5년미만은 연복리 1.0%,
경과기간 5년이상 10년미만은 연복리 0.75%,
경과기간 10년이상은 연복리 0.5%

02 다양한 노후 Plan

다양한 연금수령방법의 선택이 가능하므로 필요와 상황에 맞춘
노후 생활자금 활용이 가능합니다.(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

03 조기연금개시 옵션

조건충족시 계약체결시 정한 연금개시나이 이전에 연금개시 신청가능

04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차익 비과세

다양한 노후설계 연금개시후

다양한 연금수령방법 선택 및 자유로운 변경

- ※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연금지급형태의 구성비율을 결정해야 합니다.
- ※ 종신연금형의 경우 생존연금이 지급개시된 후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 기본보험료를 5년이상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신연금형을 선택한 경우, 확정연금형 또는 상속연금형은 종신연금형과 동시에 선택할 수 없습니다.

Option!

<조기연금> 개시옵션

▷ 조기연금개시 가능 시점

- 보험료 납입을 완료하였거나, 계약일 이후 10년이 지난 계약
(단, 확정연금형으로 전환시에는 10년)

※ 조기연금개시시점의 해약한급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의 인출
(생활자금 인출 포함)이 있었을 때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의 100%이상인 경우

▷ 신청 가능한 피보험자의 연금개시나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종신연금형 : 45~80세
- 확정연금형 및 상속연금형 : 35~80세



가입안내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3년납		만19세 ~ MIN [연금개시나이- 5, 80]세
5년납, 7년납, 10년납		만19세 ~ 75세
15년납		만19세 ~ 70세

구 분		적립형
연금지급형태		종신연금형 (20년 보증지급, 100세 보증지급 또는 기대여명보증지급)
연금개시나이		45 ~ 85세
보험 기간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보장개시일부터 연금지급개시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연금지급개시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
보험료 납입주기		월납

주1) 보험가입시점의 연금지급형태는 종신연금형으로 정해지며, 연금지급개시 전에 약관에 따라 연금지급형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주2) '기대여명'은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에 의해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가입시점 통계표에 따른 피보험자의 성별·연령별 기대여명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림)를 말하며, 피보험자의 연금개시나이를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다만, 기대여명이 5년 미만일 경우 기대여명은 5년으로 하며, 이 경우에는 관련 세제혜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에 관한 사항

보험료납입기간	최소보험료(1구좌당)	최대보험료(1구좌당)
3년납	20만원	100만원
5년납, 7년납, 10년납	15만원	
15년납	10만원	

보험료 우대에 관한 사항

(1) 매월 납입하는 주계약의 기본보험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보험료 납입시(선납시 해당 납입회차 계약해당일)에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에 추가로 적립합니다.

우대조건		우대금액
납입기간	기본보험료	
3년납	100만원 초과	기본보험료 100만원 초과부분의 0.5%
5년납 이상	50만원 초과	기본보험료 50만원 초과부분의 1.5%

(2) 보험기간 중 기본보험료가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기본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3) 보험료납입일시중지기간인 경우에는 기본보험료가 납입되지 않더라도 보험료 우대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합니다.

장기유지보너스에 관한 사항

(1) 장기유지보너스 발생일에 유효한 계약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한 장기유지보너스 금액을 추가 납입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액에 가산합니다. 단, 장기유지보너스 금액은 약관에서 정한 추가 납입보험료 납입한도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장기유지보너스 발생일 전에 약관 제3조(보험금 지급사유) 제2호에 따른 생존연금이 지급개시되는 경우, 장기유지보너스 발생일에 장기유지보너스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장기유지보너스 금액 = 장기유지보너스 기준금액 X 장기유지보너스율
- 장기유지보너스 기준금액: 장기유지보너스 발생일 전일까지의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의 합계

장기유지보너스 발생일	장기유지보너스율	
	3년납	5년납 이상
계약일부터 5년경과시점의 연계약해당일	1.0%	1.5%
계약일부터 10년경과시점의 연계약해당일	1.5%	3.5%

주) 기본보험료의 선납이 있는 경우 해당 월계약해당일에 상기의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의 합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보험기간 중 기본보험료가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기본보험료를 기준으로 장기유지보너스를 적용합니다.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액
고도재해 장해급여금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다만,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매월 40만원 (36회지급)

- ※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이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연금 계약순보험료(영업보험료에서 보장계약순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뺀 금액)를 「공시이율」로 납입일부터 일자 계산에 의하여 적립한 금액입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완료 이후의 매월 해당하는 “보장 계약순보험료 및 계약관리비용”이 있을 경우 이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또한, 인출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차감하고 계산합니다.
- ※ 고도재해장해급여금은 매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드리며, 최초의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부 터3년을 고도재해장해급여금의 지급기간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월에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이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로 봅니다.
- ※ 피보험자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당시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과 이미 납입 한보험료(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의 인출이 있었을 때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에서 인출금액이있 을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 계약자는 연금지급개시전에 연금지급형태 및 연금지급형태의 구성비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액
종신 연금형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 지급(20년 보증지급, 100세 보증지급 또는 기대여명보증지급)

- ※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이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연금 계약순보험료(영업보험료에서 보장계약순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뺀 금액)를 「공시이율」로 납입일부터 일자계산에 의하여 적립한 금액입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 완료 이후의 매월 해당하는 “보장 계약 순보험료 및 계약관리비용”이 있을 경우 이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또한, 인출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차감하고 계산합니다.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의 인출이 있었을 때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 + 1,000원, 이하일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연 금계약 계약자적립액의 인출이 있었을 때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 + 1,000원」으로 합니다.
- ※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개시 후 보증지급기간 안에 피보험자가 사망하더라도 보증지급기간중의 미지 급된 각 연금액을 연금지급일에 드립니다.
- ※ 종신연금형의 개인형(100세 보증)은 “100세-연금개시나이” 횡수만큼 연금연액이 보증지급됩니다.
- ※ 확정연금형으로 변경한 경우 연금지급개시 후 해당 확정 연금지급기간(10년, 20년) 동안에 피보험자가사 망하더라도 각 확정 연금지급기간(10년, 20년)까지의 지급되지 않은 연금액을 각 연금지급일에 드립니다.
- ※ 연금액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므로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매년 지급되는 연금액도 변경됩니다.
- ※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개시 후 보증지급횟수까지 지급되지 않은 각 연금액을, 확정연금형의 경우 연 금지급개시 후 확정 연금지급기간(10년, 20년)까지 지급되지 않은 각 연금액을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 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 ※ 연금액을 매월, 3개월, 6개월로 나누어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 2가지 이상의 연금지급 형태를 선택한 경우에는 연금지급형태의 구성비율에 따라 계산된 각 연금액의 합 계액을 매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기본보험료를 5년(60회)이상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금지급형태 중 종신연금형을 선택한 경우, 확정연금형 또는 상속연금형은 종신연금형과 동시에 선택할 수 없습니다.
- ※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전 연금사망률의 개정 등에 따라 생존연금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연금개 시당시의 연금사망률 및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생존연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연금연액예시

기준 : 여자 40세, 5년납, 월기본보험료 30만원, 60세 연금개시 (단위 : 만원)

연금지급형태		최저보증이율 가정시	평균공시이율 연 2.25%가정시 (공시이율을 상한으로 함)	공시이율(2.90%) 가정시
종신 연금형 (정액형)	10년보증	56	100	123
	20세보증	55	99	122
	100세보증	50	92	114
	기대여명보증	55	98	121
확정 연금형	10년확정	197	281	322
	20년확정	101	156	184
상속 연금형	1차년도 이후	9	56	80
	사망시 계약자적립액	1,939	2,517	2,796

해약환급금 예시

기준 : 여자 40세, 5년납, 월기본보험료 30만원, 60세 연금개시 (단위 : 만원)

경과 기간	납입보험료 (A)	최저보증이율 가정시		평균공시이율 연2.25%가정시 (공시이율을 상한으로 함)		공시이율(2.90%) 가정시	
		해약환급금(B)	환급률(B/A)	해약환급금(C)	환급률(C/A)	해약환급금(D)	환급률(D/A)
1년	360	343	95.3%	345	95.9%	346	96.3%
3년	1,080	1,039	96.3%	1,059	98.1%	1,070	99.1%
5년	1,080	1,777	98.7%	1,833	101.9%	1,863	103.5%
10년	1,080	1,889	105.0%	2,093	116.3%	2,193	121.9%
15년	1,080	1,918	106.6%	2,320	128.9%	2,510	139.5%
20년	1,080	1,948	108.3%	2,574	143.0%	2,877	159.9%

- ※ 이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및 사업비(해약공제액 포함)등이 차감되므로,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 실제 해약환급금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며, 공시이율 변동시 해약환급금도 변동됩니다.
- ※ 공시이율은 매 1개월마다 변동될 수 있으며, 현재(2022년 12월) 공시이율은 2.90%입니다. 최저보증이율은 계약 후 경과기간 5년미만은 연복리 1.0%, 5년이상 10년미만은 연복리 0.75%, 10년이상은 연복리 0.5%입니다.
- ※ 상기환급률은 최저보증이율 및 현재 적용이율이 가입시점부터 경과기간동안 계속 유지된다고 가정하였을 때,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대비 해약환급금의 비율입니다.
- ※ 상기 예시된 금액 및 환급률 등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 상기 해약환급금 및 환급률은 연계약해당일 전일 기준의 해약환급금에 장기유지보너스 해당금액(계약해당 일기준)을 포함한 금액이며, 계약해당일이 도래하기 이전에 해지시 예시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 상기 금액은 세전기준입니다.
- ※ 상기예시금액은 감독규정 제1-2조 제13호에 따른 현재 평균공시이율 2.25%, 현재(2022년 12월)의 공시이율(보험계약대출이율적용상품은 보험계약대출이율) 2.90%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 * 단, 평균공시이율은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한도로 함.
- ※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입니다.
- ※ 주계약 상품의 경우 연금개시 시점의 최저보증금액이 설정된 상품입니다. 연금개시 시점까지 유지 시 예시된 해약환급금과 관계없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의 인출이 있었을 때에는 이를 차감한금액) +1,000원'을 최저보증금액으로 하고, 이를 기준으로 연금액을 지급합니다.

가입 시 알아두셔야 할 사항

청약 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께서는 청약 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에 관한 중요사항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준수하셔야 하며 반드시 자필서명(날인 및 전자서명 등)을 하셔야 합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날인 및 전자서명 등)을 하셔야 하며 보험설계사 등에게 구두로 알린 사항은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청구제도를 이용하여 계약을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이거나,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다만, 청약시점에 만 65세 이상인 보험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약한 날부터 45일)을 초과한 경우는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전문금융소비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호 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인 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모집종사자가 계약에 관한 중요내용의 설명 등을 잘 이행하는지 확인하십시오 .

보험약관 및 계약자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 및 전자서명 등)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가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보험회사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 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적용이율에 관한 안내

이 보험상품은 보험료 산출 시 적용한 이율은 주계약 연복리 2.30% 입니다.

배당에 관한 안내

이 상품은 무배당 상품으로 배당이 없습니다.

예금자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에 한하여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기존계약 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인수거절, 보험료 인상, 보장내용 축소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안내

생명보험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시 신속히 해결해 드립니다.

KB라이프생명 보험상담 안내 : 1588-3374, 생명보험협회 소비자보호부: 02-2262-6562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 국번없이 1332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경우 아래를 참조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내장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자료입니다. 계약자께서 본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본 상품에 제시된 보장내용, 보험기간 등을 변경하여 보험설계를 하실 경우, 당사의 상품과 유사한 다른 회사의 상품을 비교하실 경우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KB라이프생명 보험상품 및 가격 공식 : www.kblife.co.kr

■ 생명보험협회 보험상품 비교 공식 : www.klia.or.kr

* 본 안내자료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위한 요약자료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해당 모집종사자는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중계하는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입니다.

방카슈랑스 부조리 신고센터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대출과 연계하여 보험가입을 강요하거나 기존에 가입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도록 한 후 새로운 보험계약의 가입을 권유하는 등 부당한 요구를 한 경우, 금융감독원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Tel : 국번없이 1332, 홈페이지 : www.fss.or.kr)

 KB 국민은행

콜센터 : 1588-999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6(여의도동)

www.kbstar.com

보험대리점 등록번호 : 제2003091003호

 KB 라이프

고객센터 : 1588-337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98 KB라이프타워(06253)

www.kblife.co.kr

